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55호 2024. 3. 13.(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4-39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4-32호	도로명주소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24-38호	도로명주소 고시	4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4-332호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 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6
거창군 공고 제2024-411호	보상계획 공고 【거열산성 진입도로 ~ 국도 3호선 연결공사】	12
거창군 공고 제2024-419호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8
거창군 공고 제2024-429호	2024년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22
거창군 공고 제2024-385호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4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22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취소 공고	43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27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44

<b>회 람</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 거창군수

###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현황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정비완료일
		총저수량 (천 $m^3$ )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장팔4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767-1번지	9.1	135	5.8	45	2024. 1. 8.

2. 지정해제 사유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완료

3.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건설교통과(☎055-940-3543)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1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밭길 8 등 4개소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53-12 등 3개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1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밭길 8 등 4개소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53-12 등 3개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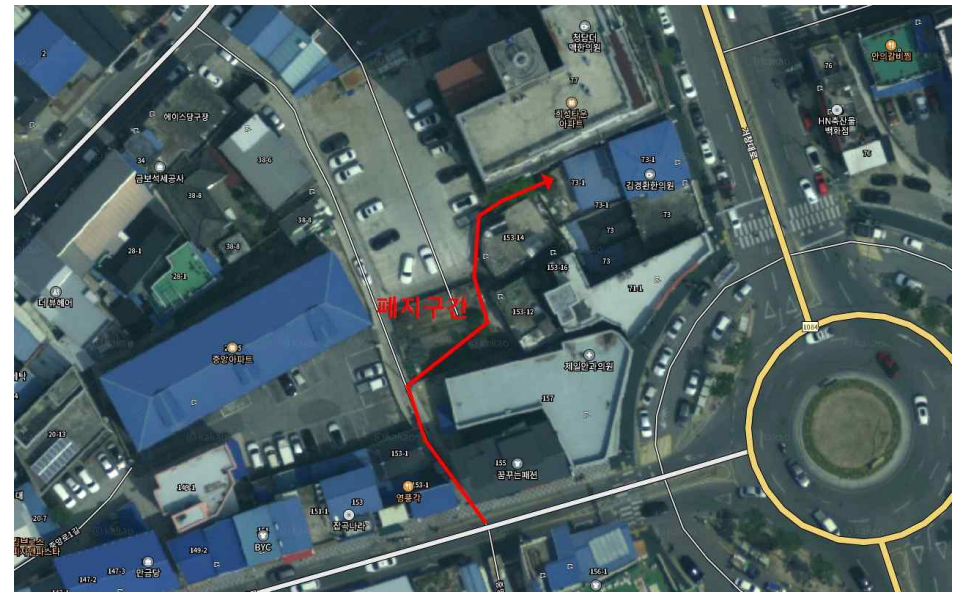
#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거창읍	변경 전	중양로	거창읍 대동리 842-1 (중양로 153-1)	거창읍 대동리 781 (중양로 153-16)	도면참조	3	없음	종속구간 변경(폐지)	직권
		변경 후	중양로	-	-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 응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응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거창군수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가. 용역명 : 응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나. 위치 : 거창읍 장팔리 응곡저수지 ~ 김천리 김천1교 일원
- 다. 용역개요 : 과업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참조】
- 라.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건설교통과
-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간(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용역임.
- 바. 용역범위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
- 사. 용역예정금액 : 금2,344,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아. 입찰예정시기 : 2024년 4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나.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이내로 하여야 하고,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권장(『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2 권장사항)】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2023. 6. 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http://www.g2b.go.kr))

또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 게시로 같음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대하여 거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용역설명회 : 실시설계보고서로 같음(공고기간 중 요청 시 제공)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 : 2024년 3월 27일(수요일) 09:00 ~ 18:00까지 (1일간)

②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택배,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③ 제출장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건설교통과 (☎055-940-3642)

라. 본 용역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3)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④ 자기평가서 : 1부(별권제출)

⑤ 업무 수행계획서 8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 업체명 표기 1부, 부분 : 업체명 미표기 7부)

⑥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수행계획서 스캔 PDF파일, 업무중복도 작성파일, USB본체 라벨 부착(용역명, 회사명)】

※ 면접평가는 서면(업무수행계획서)평가로 대체합니다.



####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4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 2022-1881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 제1호 등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을 적용합니다.

※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 5. 기타사항

-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 나. 참가등록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는 가능합니다.
-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아.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처분대상이 됩니다.
-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신내용을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에 게재합니다.
-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40-3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읍 상림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거열산성 진입도로 ~ 국도3호선 연결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2024. 3. .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거열산성 진입도로 ~ 국도3호선 연결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79m, B=20.0m, 국도 가·감속차로 설치 1식

####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 3. 보상시기 : 별도 보상통보

#### 4.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현금 지급한다.

(감정평가 업자선정 : 사업시행자가 2인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시 별도 1인 선정)

#### 5. 보상절차

가) 토 지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제출 후 보상

나) 지장물 : 철거후 보상금 전액 지급

#### 6. 보상계획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7. 보상계획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055-940-3593)

#### 8.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별첨 1】 토지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현실	공부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54필지			87,502	35,188		16인			
1	거창읍 상림리	산29-7	도	도	15,773	5,898	-	국 (국토교통부)			
2	거창읍 상림리	714-1	도	도	168	168	-	국(국토 교통부)			
4	거창읍 상림리	717-1	도	도	369	369	-	국(국토 교통부)			
5	거창읍 상림리	719	도	도	506	46	-	국(국토 교통부)			
6	거창읍 상림리	718-1	도	도	134	72	-	국(국토 교통부)			
7	거창읍 상림리	747-39	구	구	3,147	1,881	-	국(농림 수산부)			
8	거창읍 상림리	722-2	도	도	176	176	-	국(국토 교통부)			
9	거창읍 상림리	722-1	도	도	279	279	-	국(국토 교통부)			
10	거창읍 상림리	722	전	전	530	28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21	전계정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41	거창사과 원예농업 협동조합	
11	거창읍 상림리	723	도	도	393	393	-	국(국토 교통부)			
12	거창읍 상림리	720-6	도	도	23	23	-	국(국토 교통부)			
13	거창읍 상림리	720-4	도	도	1	1	-	국(국토 교통부)			
14	거창읍 상림리	724-8	도	도	68	68	-	국(국토 교통부)			
15	거창읍 상림리	산31-6	도	임	802	33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73-12, 104동 810호(삼진아파트)	이종현			사망 말소자
16	거창읍 상림리	729	도	도	195	38	-	국(국토 교통부)			
17	거창읍 상림리	724-11	도	도	76	76	-	국(국토 교통부)			
18	거창읍 상림리	728	도	도	440	440	-	국(국토 교통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현실	공부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9	거창읍 상림리	720-7	답	답	1,098	949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174-76	김영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거창농업 협동조합	
20	거창읍 상림리	720-1	답	답	1,453	129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174-76	김영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거창농업 협동조합	
21	거창읍 상림리	724-1	대	대	984	10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70	박태화 (지분1/2)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주식회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70	신은영 (지분1/2)			
22	거창읍 상림리	724-5	도	도	213	213	-	국(국토 교통부)			
23	거창읍 상림리	724-7	도	도	183	183	-	국(국토 교통부)			
24	거창읍 상림리	724-9	도	도	182	60	-	국(국토 교통부)			
25	거창읍 상림리	724-10	도	도	158	65	-	국(국토 교통부)			
26	거창읍 상림리	산30	도	도	3,669	1,926	-	국(국토 교통부)			
27	거창읍 상림리	724-6	도	도	15	15	-	국(국토 교통부)			
28	거창읍 상림리	725-3	도	도	142	120	-	국(국토 교통부)			
29	거창읍 상림리	725-4	도	도	155	43	-	국(국토 교통부)			
30	거창읍 상림리	726	도	도	932	833	-	국(국토 교통부)			
31	거창읍 상림리	산31-5	도	임	1,699	131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73-12, 104동 810호(삼진아파트)	이종현			
32	거창읍 상림리	727	도	전	347	267	-	국(국토 교통부)			
33	거창읍 상림리	산31-1	도	임	4,083	1,433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73-12, 104동 810호(삼진아파트)	이종현			
34	거창읍 상림리	산116- 29	도	도	10,83 4	3,458	-	국(국토 교통부)			
35	거창읍 상림리	720-3	답	답	2,643	1,197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동3길 102-16	박점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41	거창사과 원예농업 협동조합	
36	거창읍 상림리	717	답	답	2,243	214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하동1길 14-10, 102호(궁전그린빌)	정선아			
37	거창읍 상림리	747-29	구	구	9,573	464	-	국(농림 수산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현실	공부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8	거창읍 상림리	716	임	임	185	68	-	정점술			미등기
39	거창읍 상림리	714-3	도	답	331	218	-	거창군			
40	거창읍 상림리	산27-5	임	임	354	78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4길 45	김순희 (1/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29, 104동 702호(대경박스빌)	정현빈 (1/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23-4, 3층	정영호 (1/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거창농업 협동조합	
41	거창읍 상림리	산27-3	도	임	6,577	6,505	-	거창군			
42	거창읍 상림리	산27-4	임	임	972	596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29, 104동 702호(대경박스빌)	정현빈 (1/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23-4, 3층	정영호 (1/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거창농업 협동조합	
43	거창읍 상림리	703-1	답	답	2,318	31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5길 41-6, 401호	임종훈			
44	거창읍 상림리	703-11	답	답	476	402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5길 41-6, 401호	임종훈			
45	거창읍 상림리	703-9	도	답	211	211	-	거창군			
46	거창읍 상림리	702	답	답	59	24	-	거창군			
47	거창읍 상림리	산25-1	임	임	258	1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00	거창유씨 참여공파 종중			
48	거창읍 상림리	산55	구	구	29	29	-	국(농림 수산부)			
49	거창읍 상림리	산27-1	임	임	9,974	4,11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29, 106동 1403호 (대경박스빌)	정희철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21	전계정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41	거창사과 원예농업 협동조합	
50	거창읍 상림리	산27-8	도	임	233	119	경남 함양군 서상면 가르내길 174-20	최이금			
51	거창읍 상림리	702-1	전	전	814	15	경남 함양군 서상면 가르내길 174-20	최이금			
52	거창읍 상림리	703-2	도	유	529	501	-	거창군			
53	거창읍 상림리	702-3	답	답	174	26	-	국 (법무부)			
54	거창읍 상림리	702-4	도	답	322	186	-	거창군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거창군청에서 시행하는 『거열산성 진입도로 ~ 국도3호선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추천 감정평가업자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

연번	성 명	주 소	면적(㎡)	날인(서명)
1				
2				
3				
4				
5				
6				
7				

2024. . .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2024-419호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

3. 주요내용

- (안 제1, 2조) 조례의 목적 및 봉사회의 정의
- (안 제3조)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포상 근거

4. 예고기간 : 2024. 3. 7.(목) ~ 3. 28.(목)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다. 전화 055-940-3185, 팩스 055-940-3169, 이메일 jsw0327@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주민자치담당 **☎(055)940-31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거창군이 동참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거창군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재난 구호 사업
2. 협의회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포상)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년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사회·경제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사각지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2024년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중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 중복지원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원 등

○ 신청기간 : 2024. 3. 11.(월) ~ 3. 18.(월) 18:00 한

○ 신청방법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담당 또는 관할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발굴자 작성),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내	상담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월 30만원 이내
건강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	연 200만원 이내	법률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등	연 350만원 이내
학업	수업료, 학원비 등	월 30만원 이내	활동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내
자립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등	월 36만원 이내	기타	홍터 교정, 교복 지원 등	유사지원 참조

### 3.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2024. 3월 말 ~ 4월 중

○ 선정방법 : 거창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자 수, 지원금액 및 기간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선정결과 통보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유의사항

○ 거창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결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055-940-8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확대 등을 정함(안 제2조·제11조의2·제11조의3)

- 1) 범위확대 :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그 밖에 유산한 시설
- 2) 법령위임사항 신설 :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 3) 위탁 근거 신설

나. 군 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선임방법을 확대함(안 제5조)

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함(안 제10조)



마. 법령개정사항 등 정비함

- 1)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 2) 법령 등의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안 제10조·제13조)
- 3)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법률로 규정되는 사항 삭제(안 제12조)

4. 예고기간 : 2024. 3. 12.(화) ~ 4. 1.(월)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전화 055-940-3562, 팩스 055-940-3579, 이메일 februs@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위촉”을 “위촉 또는 공개채용”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1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안전·이익을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면제 대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사업추진협의회
3. 주민협의체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u>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공동이용시설)</b>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b>제3조제5호</b>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li> <li>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li> <li>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li> </ol>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 &lt;신 설&gt;</p> <p><b>제3조(도시재생위원회)</b> 「거창군 계획조례」 따른 거창군 계획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u>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공동이용시설)</b>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b>제3조제6호</b>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li> <li>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li> <li>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li> </ol> <p><b>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b></p> <p><b>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b></p> <p><b>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b>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p>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창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공개채용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창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제11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

하는 활동

- 2. 주민의 건강·안전·이익을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면제 대상”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도시재생지원센터
- 2. 사업추진협의회
- 3. 주민협의체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 설>

제11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도시재

<삭 제>



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관계법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6의2. (생략)

6의3. (생략)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 (생략)

8의2. (생략)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 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12. (생략)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 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033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 물류단지개발사업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 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 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16.>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 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2022. 12. 6.>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6.]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

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4.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2023. 12. 21., 일부개정.]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공보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제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



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대체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예산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2022.11.30.)

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5.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 두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22호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작 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취소공고**

2024년 3월 6일 게시된 거창군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작 및 설치』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를 취소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거창군수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조구매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변경)**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조구매』 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거창군수

1. 모집기간 : 2024. 3. 12.(화) ~ 3. 18.(월) 18:00 / 7일간

2. 사업내용

가.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1식

- 전처리, 선별, 상품배출라인, 중량집계 프로그램 설치 등

나. 설비 제작, 설치, 시운전 포함

3. 모집인원 : 예비 평가위원 21명 이상(평가위원 7명의 3배수 이상)

4. 모집분야 :

가. 품목전문가 :

- 농산물 생산·지도·유통 관련 현직 공무원

- 해당품목(사과) 생산농가

나. 선별기 전문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 선별기 전문가

다. 농산물 선별포장시스템 운영전문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실무자 또는 책임자

## 5. 평가위원(후보자) 자격요건

### 가. 품목전문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생산, 지도, 유통 등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현직 담당 공무원

(2) 생산농가 : 사과 생산 3년 이상인 농가 : 농가의 주소지와 생산 과원이 거창군 내에 있는 농가에 한정한다.

나. 선별기 전문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 선별기 분야 전문가

다. 농산물 선별포장시스템 운영전문가 : 산지유통센터(APC, 농업경영체)의 상품화 실무책임자

### < 모집분야별 자격조건 및 모집인원 >

분 야	자 격	최종 평가위원 인원수	예비 모집인원
품목전문가	① 농산물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 공무원 ② 사과 생산경력 3년 이상인 농가	2	6
선별기 전문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 선별기 분야 전문가 *선별기 전문가 분야는 해당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의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2	6
농산물 선별포장시스템 운영전문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업경영체)의 상품화 실무책임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APC 선별기 관련 실무책임자, 또는 APC 센터장으로 한정함	3	9
계		7	21

## 6. 제외대상

가. 해당 평가대상(입찰참가자)과 관련하여 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산정 방식은 용역, 자문, 연구의 완료일 기준으로 한다.

나.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자

다.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7.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한 : 2024. 03. 18.(월)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거창군청 농업기술과 수출유통담당(055-940-8262)

다. 접수방법 : 기한 내 공문,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E-mail : hmp1234@korea.kr, ☎ 055-940-8262)

※ 우편 보내실 곳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기술과 수출유통담당

※ 우편 및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제출서류(※ 아래 서류 미제출 시 접수 불인정)

가.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붙임 1】

나. 보안각서 1부 --- 【붙임 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3】

라.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1부 : 공무원, 교수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마. 공인된 자격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등) 1부

## 9.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일시 : 2024. 03. 21.(목)

나. 선정인원 : 9명(평가위원 7명 + 예비평가위원 후보 2명)

다.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천

(2) ①다빈도, ②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라.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게 우선으로 개별통보(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 우선 통보 시, 3회 불능 후 즉시 1회 문자 송신한 이후 5분 이내 미답변 시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 10. 제안서 평가

가. 예정일시 : 2024. 03. 21(목) 13:00

나. 평가장소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 3층 세미나실

※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으로 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하신 자료는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라. 평가위원 수당은 거창군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농업기술과 수출유통담당(055-940-8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붙임

가.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보안각서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1】

2024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조구매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분야	
자택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직장명		직위(직급)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교	학위	전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24. . .

작성 자: (인)

거창군수 귀하



## 등록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분야 : 본인의 참가자격(전공분야 등)에 부합하는 분야 1개를 기재
  2. 인적사항 ~ 3.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
    - ▶ 직급기재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직렬까지 기재
    - ▶ 공기업·준정부기관·협회 등은 임원, 1급, 2급, 3급으로 기재
    - ▶ 연구기관은 연구원, 학계는 정교수 등으로 기재
  4.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
    - ▶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
    - ▶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

단,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
  5.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이후 평가대상 분야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7. 주요저서 및 논문은 최근 5년간 발표한 내용만 기재
  8. 평가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재
- ※ 상기 각 사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 **참여자격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붙임 2】

## 보 안 각 서

본인은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조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 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거창군수 귀하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거창군은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조구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직장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보유현황,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해당사업 종료시점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나, 수집동의 거부 시 평가위원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조구매』 사업 종료 시점까지 보관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